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결산	변동성	변경사항
1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○	9)
2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○	9)
3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2)
4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2), 9)
5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2), 9)
6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2)
7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2)
8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2)
9	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1), 2), 9)
10	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1), 9)
11	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5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1), 9)
12	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7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1), 9)
13	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○	○	1), 6), 7), 8), 9)
14	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6), 7), 8), 9)
15	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2), 7), 8), 9)
16	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9)
17	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2), 9)
18	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(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2), 6), 7), 8), 9)
19	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2), 7), 8), 9)
20	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(재간접형)	○	○	2), 6), 7), 8), 9)
21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2), 7), 8), 9)
22	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2)
23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○	2), 6), 7), 9)
24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2), 6), 9)
25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9)
26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2)
27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2), 9)
28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2), 9)
29	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9)
30	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9)
31	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9)
32	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자투자신탁(파생재간접형)	-	-	2), 6), 9)
33	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2), 9)
34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6), 9)
35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6), 9)
36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2), 6), 9)
37	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2), 9)

38	미래에셋영리한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(채권)	○	-	2), 6), 9)
39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	-	-	2), 3), 7), 8), 9)
40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	-	-	2), 3), 7), 8), 9)
41	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-	2)
42	미래에셋채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2), 9)
43	미래에셋채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9)
44	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	-	○	2)
45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9)
46	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2), 3), 7), 8), 9)
47	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	-	-	2), 6), 9)
48	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2), 6), 9)
49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2), 9)
50	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○	○	2), 6), 7), 9)
51	미래에셋합리적인시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(재간접형)	-	-	2), 9)

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전략 문구 추가
- 2)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문구 추가
- 3) 환매수수료 삭제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8) 법 개정사항 반영
- 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7월 15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투자전략 문구 추가
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9. 가.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(운용 전략 및 투자방침)	<p>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따라 기본수익전략, 시장중립전략, 멀티인컴전략, 자본수익전략 등 4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투자합니다.</p> <p>② 각 전략의 모펀드는 주식, 채권,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되며 금융시장 상황, 시장 전망 및 펀드내 가치변동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전략별, 전략내 모펀드의 투자비중</p>	<p>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따라 기본수익전략, 시장중립전략, 멀티인컴전략, 자본수익전략 등 4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투자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.</p> <p>② 각 전략의 모펀드는 투자위험이 상이한 주식, 채권,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되며 금융시장 상황, 시장 전망 및 펀드내 가치변동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전략별, 전략내 모펀드의 투자비중을 조정하며 투자할 수</p>

	을 조정하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. <생략>	있습니다. <생략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-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

-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5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

-미래에셋QV글로벌자산배분7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

-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9. 가.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(1) 투자전략(운용 전략 및 투자방침)	<p><중략></p> <p>③ 운용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국내외 주식/채권/대안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(ETF 포함)을 투자후보 대상으로 하여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과 위험 정도, 글로벌 시장환경 등의 정량적/정성적 분석을 통해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</p> <p>④ 이후 시장환경 변화와 투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포트폴리오 재조정(Rebalancing)을 <u>수행합니다.</u></p> <p><생략></p>	<p><중략></p> <p>③ 운용규모가 10억원 <u>이상인 투자전략과 위험이 상이한</u> 국내외 주식/채권/대안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(ETF 포함)을 투자후보 대상으로 하여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과 위험 정도, 글로벌 시장환경 등의 정량적/정성적 분석을 통해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</p> <p>④ 이후 시장환경 변화와 투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<u>주기적으로</u> 포트폴리오 재조정(Rebalancing)을 <u>수행하며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.</u></p> <p><생략></p>

2)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문구 추가

-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투자신탁(재간접형)

-미래에셋합리적인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투자신탁(재간접형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다. (1)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 방침)	<p>-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(ETF 등)에 50% 이상 투자하며, 모멘텀 전략을 활용하여 최근 성과가 우수하고 상대적 성과도 우수한 다양한 자산 및 전략의 ETF에 분산 <u>투자합니다.</u></p>	<p>-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(재간접형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(ETF 등)에 50% 이상 투자하며, 모멘텀 전략을 활용하여 최근 성과가 우수하고 상대적 성과도 우수한 다양한 자산 및 전략의 ETF에 분산 <u>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.</u></p>

-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

-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투자신탁1호(H)(주식혼합-재간접형)

-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혼합-재간접형)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p>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다. (1)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 방침)</p>	<p>-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% 이하,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%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% 이상 투자합니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.</p> <p><중략></p> <p><신설></p>	<p>-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90% 이하,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50% 이하 그리고 이 자산들을 합산하여 50% 이상 투자합니다.</p> <p>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펀더멘털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선별된 국가의 인컴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프리미엄 수익 추구 전략 등이 내포되어 있는 <u>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. 이와 같이 투자 대상자산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.</u></p> <p><중략></p> <p>③<u>시장상황과 자산가격변동에 따른 월별 리밸런싱을 실시하나 급격한 시장변동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
- 미래에셋OCIO-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
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p>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다. (1)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 방침)</p>	<p>-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</p> <p>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30%이상 투자하며, 주식 및 기타자산에 <u>일부</u> 투자합니다.</p> <p>② 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(상장부동산펀드 등) 등에 주로 투자 하고,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.</p> <p><중략></p> <p>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,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자산별 실질편입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</p>	<p>-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</p> <p>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30% 이상 투자하며, 주식 및 기타자산에 <u>분산</u> 투자합니다.</p> <p>② 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(상장부동산펀드 등) 등에 주로 투자 하고,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. <u>상관 관계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 합니다.</u></p> <p><중략></p> <p>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,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자산별 실질편입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<u>주식 및 리츠 등의 경우 기업 실적 발표 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. 시장상황,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합니다.</u></p>
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로스4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

-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자투자신탁(파생재간접형)
-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영리한글로벌채권증권자투자신탁(채권)
-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- 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
-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
-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다. (1)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 방침)	<p>-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① 미주, 유럽,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에 최소 60%이상 투자합니다.</p> <p>② <u>주요국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를 실행합니다.</u> <u>또한 섹터 내 종목 선택의 집중으로 섹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.</u></p>	<p>-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(채권)</p> <p>① 미주, 유럽,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에 최소 60%이상 투자합니다.</p> <p>② <u>투자지역(이머징/선진국/한국), 발행기관(국공채/회사채), 등급(투자등급/투기등급), 만기수준(장기/중기/단기)등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글로벌채권에 분산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. 탄력적으로 채권 섹터에 대한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주기적인</u></p>

	<생략>	섹터 자산배분 리밸런싱과 시장 이벤트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. <생략>
--	------	---
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자산관리TIF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투자신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p>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다. (1)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 방침)</p>	<p>-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 (채권혼합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90% 이하, 주식에 40% 이하, 집합투자증권에 40% 이하로 투자합니다.</p> <p>②국공채, 통안채 등의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,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으로 국내 주식에도 일부 <u>투자합니다.</u></p> <p>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-미래에셋밸런스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 (채권혼합)</p> <p>①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90% 이하, 주식에 40% 이하, 집합투자증권에 40% 이하로 투자합니다.</p> <p>②국공채, 통안채 등의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,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으로 국내 주식에도 일부 투자하되 <u>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누적함으로써 장기적인 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.</u></p> <p><생략></p> <p>④편입된 다양한 자산의 비중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. 다만 리밸런싱 또는 신규 자산 편입 시 타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.</p>

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

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다. (1)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 방침)	<p><u>-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(주식 혼합-재간접형)</u> <중략></p> <p>③ 운용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국내외 주식/ 채권/대안투자 관련 집합투자증권(ETF 포함) 을 투자후보 대상으로 하여 투자대상 집합투 자증권의 수익률과 위험 정도, 글로벌 시장환 경 등의 정량적/정성적 분석을 통해 최종 포 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.</p> <p>④ 이후 시장환경 변화와 투자 집합투자증권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포트폴리 오 재조정(Rebalancing)을 <u>수행합니다.</u></p> <p><생략></p>	<p><u>-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(주식 혼합-재간접형)</u> <중략></p> <p>③ 운용규모가 10억원 <u>이상인 투자전략과 위 험이 상이한</u> 국내외 주식/채권/대안투자 관 련 집합투자증권(ETF 포함)을 투자후보 대상 으로 하여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 과 위험 정도, 글로벌 시장환경 등의 정량적/ 정성적 분석을 통해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 합니다.</p> <p>④ 이후 시장환경 변화와 투자 집합투자증권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<u>주기적으 로</u> 포트폴리오 재조정(Rebalancing)을 <u>수행 하며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.</u></p> <p><생략></p>

3) 환매수수료 삭제

-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(분배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 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 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 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 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 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 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 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u>2. 종류A-e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	
	<u>3. 종류AG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	
	<u>4. 종류C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5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6. 종류CG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, A-e, AG] 없음</u> <u>[C, C-e, CG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-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수료)	<p><u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30일이상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2. 종류A-e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30일이상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3. 종류AG 수익증권</u> <u>3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30일이상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4. 종류C 수익증권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	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5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6. 종류CG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 <u>7. 종류S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, A-e, AG] 30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 <u>30일이상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 <u>[C, C-e, CG, S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수료)	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C1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2. 종류C2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3. 종류C3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4. 종류C4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5. 종류C5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C1, C2, C3, C4, C5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 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시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투자신탁(재간접형)	<u>2</u>	<u>3</u>	-	<u>10.12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산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8.98</u>	<u>9.56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산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3	3	<u>12.86</u>	<u>12.76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산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2	2	<u>16.95</u>	<u>16.67</u>
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투자신탁	4	4	<u>7.33</u>	<u>7.76</u>
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5.83</u>	<u>6.18</u>
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산투자신탁1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4	4	<u>8.32</u>	<u>8.29</u>

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 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 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<u>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</u>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<u>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 이 발표하는 가격<u>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u>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<u>(외국집합투자 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 격)</u>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 서 거래된 최종시가<u>(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u></p>

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5조(고난도 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2. <생략> 나. <삭제>
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	<p><삭제></p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</p>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</p>

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가.회사의 개요	<p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 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</p>	<p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</p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	<p>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</p>	<p>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</p>

에 관한 사항		
---------	--	--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